

기획조사 06-018

**中,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 4**

**KOTRA 동북아팀**

## 【요약】

### 1. 최근 중국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 동향

- ☐ 중국 세무총국은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를 2006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향후 고소득 외국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
- ☐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연소득 12만 위안 이상의 고소득자는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자진 납세신고 하도록 규정
- ☐ 지난해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기업 등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실시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자(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
-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개인소득세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표 관련 통지(關於<個人所得稅>的通知)”를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
- ☐ 중국 세무총국은 금년 1월 <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 개인의 개인소득세 납세대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加強外籍人員個人所得稅檔案資料管理的通知)”를 발표하여 금년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 중국 개인소득세 세제 현황

- ☐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지난 1980년 제정된 이후 1993년과 1999년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
- ☐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법령은 상술한 <개인소득세법>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이외에 대부분이 법령해석에 대한 상급기관의 의견을 하급기관에 전달하는 <통지(通知)>가 상당수를 차지
-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내 주소지가 있거나 주소지가 없는 자가 중국 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민 납세자로 분류

- ☐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가 중국 내 연간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1년 미만 일 경우 중국 내 근무기간 중 취득한 중국 내 지급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소득의 과세권도 중국 세무당국에 있다고 규정
- ☐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가 1년 이상~5년 미만 중국 내 근무 중 취득한 중국 및 한국 내 모든 급여소득은 모두 중국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대상이 됨
- ☐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의 중국 내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6년째부터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3.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강화 배경과 전망

-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4년부터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 과거 중국 내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세수징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시장개방 확대로 중국 내 납부대상 외국인이 크게 증가
- ☐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세제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외국기업의 세금탈루 현상 통제에 어려움을 인식
- ☐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의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납세 신고 의무대상자를 중심으로 납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
- ☐ 외국인 개인별 세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당국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유관기관 간 납세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 2005년 12월말 현재 중국정부가 승인한 외상투자기업 수는 총 552,942개사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국적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전망

#### 4. 중국내 외국인 소득세 납세현황 및 탈루사례

- ☐ 2004년 중국 전체 세수수입은 2조 5,718억위안이며 이중 개인소득세는 1,731.1억위안으로 나타남
- ☐ 중국 내 전체 소득 중 급여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어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5. 우리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 ☐ 최근 중국의 세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각별한 유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 ☐ 중국은 우리의 1대 투자대상국으로 최근 우리의 대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한 인식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세무관리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 ☐ 탈세는 범법행위로 주재국 법률에 의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 해당국의 세법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그 동안 과소 신고한 기업과 개인은 점진적으로 납부세금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체재인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바, 기업차원의 지원 방안마련이 요구됨
-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부담이나 원천징수의 의무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기업차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함
- ☐ 최근 인적교류 증가에 따라 단기출장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에 대한 유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 시 다국적 기업의 고소득 관리자가 우선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목 차

|                                                     |           |
|-----------------------------------------------------|-----------|
| <b>I. 최근 중국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 동향 .....</b>            | <b>1</b>  |
| 1. 2006년 세무조사 중점 조사대상 / 1                           |           |
| 2. 납세신고 의무대상 명시 / 1                                 |           |
| 3.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대상 확대 / 2                             |           |
| 4. 개인소득세 관리시스템 강화 / 3                               |           |
| 5. 외국인 개인소득세 집중관리 추진 / 4                            |           |
| <b>II. 중국 개인소득세 세제 현황.....</b>                      | <b>6</b>  |
| 1.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 6                               |           |
| 2. 중국 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소득 / 9                      |           |
| 3. 개인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 10                             |           |
| 4.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 우대혜택 항목 / 12                       |           |
| <b>III.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강화 배경과 전망 .....</b>             | <b>13</b> |
| 1.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강화 배경 / 13                           |           |
|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및 전망 / 14                             |           |
| <b>IV. 중국내 외국인 소득세 납세현황 및 탈루사례 .....</b>            | <b>16</b> |
| 1. 중국 내 외국인 개인소득세 납세현황 / 16                         |           |
| 2. 중국 내 외국기업 직원의 개인소득세 탈루 적발사례 / 16                 |           |
| <b>V. 우리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b>                      | <b>18</b> |
| 1. 급변하는 중국의 세제환경 변화 / 18                            |           |
| 2. 향후 대응방안 및 시사점 / 20                               |           |
| <b>【참고】 최근 개정 주요 법령 .....</b>                       | <b>23</b> |
|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 23                          |           |
| - 개인소득세 전원전액관리 원천징수 신고관리 집행방법 / 30                  |           |
| -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령 관련 통지 / 34                 |           |
| - 국가세무총국의 외국 국적 개인의 개인소득세납세대장 관리를<br>강화하기 위한 통지/ 47 |           |

## I. 최근 중국의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 동향

### 1. 2006년 세무조사 중점 조사대상

- ☐ 중국 세무총국은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를 2006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에 중국 내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세원 관리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
- ☐ 2006년 중국 세무당국의 중점 조사대상 분야는 △부동산업 △오락업 △금융보험업 △체신통신업 △석탄생산업 △폐기물자 경영업 △외국기업 △개인소득세 등 8종에 달함
- ☐ 이밖에도 연간 기업소득세 500만위안 납입기업과 연간 매출수입 1억위안 이상기업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 2. 납세신고 의무대상 명시

- ☐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
- ☐ 납세신고 대상자가 △연소득 12만 위안 이상 △중국 내 둘 이상의 장소에서 급여소득이 있는 자 △중국 外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자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정황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함
- ☐ 특히 연소득 12만 위안 이상의 납세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의무화

-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곳 및 기타 관련사항의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

### 3.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사항 확대

- ☐ 지난해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기업 등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실시 후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자(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관련 정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소득액, 각 납세자 별 원천 징수액과 그 합계금액을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명시
- ☐ 중국정부는 <개인소득세 전원전액관리 원천징수관리 잠정방법(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繳申報管理暫行辦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방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다음달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과세대상 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기본정보와 원천징수 세액 및 조세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
- 개인소득세의 전원전액 원천징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과세대상 소득에는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재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일시재산소득) △국무원재정부문이 징세하기로 확정한 기타의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됨
- 특히 최초 원천징수 신고시 중국 내 주소가 없는 개인의 경우 △외국어 성명, 국적 또는 지역(중문, 외국어) △직업, 중국내 업무 및 국외 직무 △입국시기, 근무기한 및 출국시기 △중국내 근무단위의 명칭, 세무등기증 번호 및 주소 △국외 소속단위의

명칭 및 주소(중문, 외국어) △소득의 지급지역(중국 국내지급 및 국외 지급 모두 포함)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 4. 개인소득세 관리 시스템 강화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개인소득세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표 관련 통지(關於<個人所得稅>的通知)”를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 향후 “개인수입 데이터 관리제도”를 실시하여 납세자 개인별 소득 및 납세정보를 축적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동태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 “원천징수 명부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을 지급한 모든 기초정보 및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원천징수자별 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추진
- 세무기관은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공한 소득정보 및 납세정보에 대한 교차대조 실시 확인
- 公安, 검찰, 법원, 공상국, 은행, 문화체육 부서, 부동산 관리부서, 노동부서, 교통부서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정기적 정보교환을 추진
-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화 프로그램의 개발 노력
- 각급 세무기관은 매년 7월 말, 익년 1월 말까지 6개월 및 1년간의 기본상황, 소득 및 납세상황을 엑셀형식으로 “중점납세자 소득과 납세상황 집계표”를 작성하여 국가세무총국에 송부하도록 조치

□ 세무등기 관리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누락징수 또는 누락등기 납세자를 철저히 관리

○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자는 취득한 소득전부를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를 통해 세무기관의 관리에 귀속시켜 납세평가 관리를 시행

## 5. 외국인 개인소득세 집중관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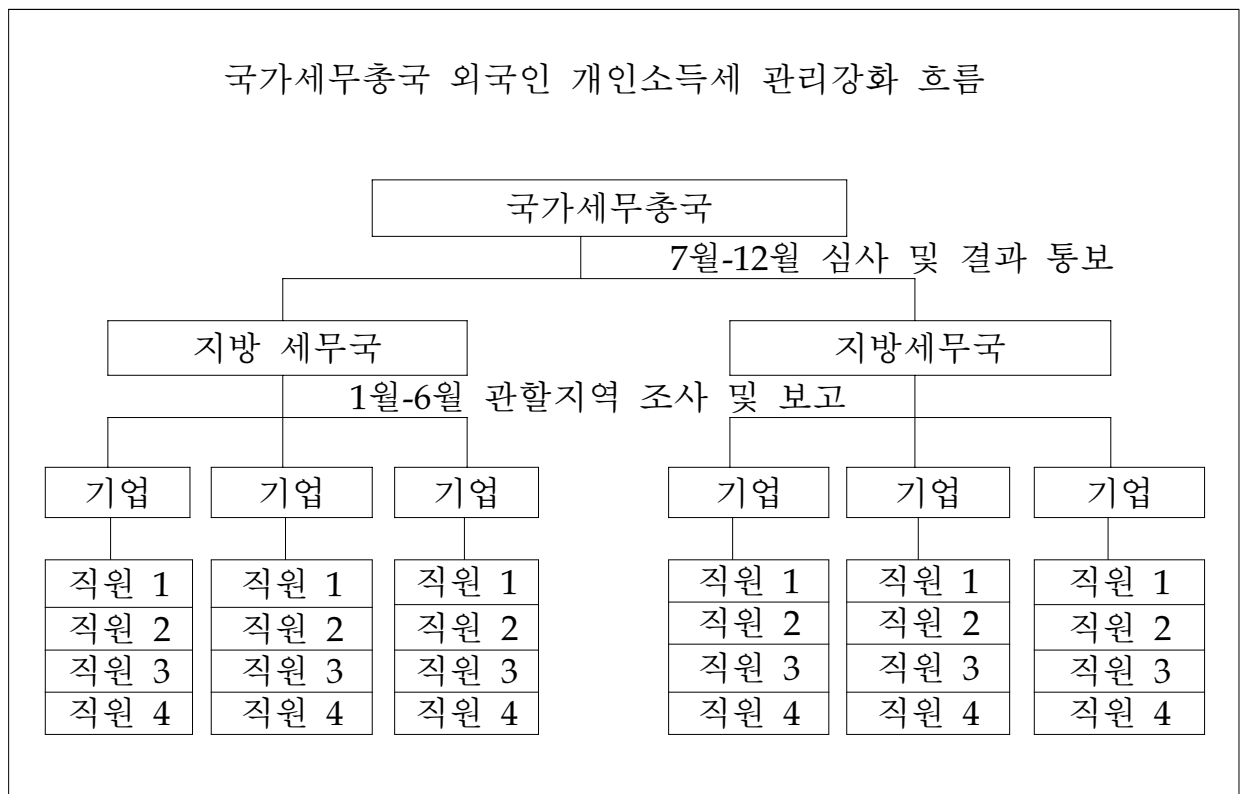
□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표 관련 통지(關於印發<個人所得稅>的通知)”을 통하여 국민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 강화를 규정

○ 외국인 세무관리 서류 상에 △성명(중문,영문) △성별 △출생지(중문,영문) △생년월일 △외국의 주소(중문,영문) △국적 또는 지역 △신원증명 유형 및 번호 △거류허가 번호 △취업증 번호 △직업 △중국내 직무 △외국의 직무 △입국시간 △근무기간 △중국내 예정 체류기간 △예정 출국시간 △중국내 근무지 명칭, 세무등기번호 및 연락처 △중국 내 초빙 및 계약체결 단위 명칭, 세무등기번호 및 연락처 △외국 파견단위 명칭 및 연락처(중문,영문) △지급지(경내지급, 경외지급 여부 포함) △중점납세자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

□ 중국 세무총국은 금년 1월 <국가세무총국의 외국인 개인의 개인 소득세 납세대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加強外籍人員個人所得稅檔案資料管理的通知)”를 발표,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를 크게 강화

○ 동 <통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단위 외국인에 대한 기본 납세관리대장 작성 △관리대장을 기초로 개인별 납세대장 작성, 관리 △변동사항에 대한 동태적 관리 △납세대장 작성에 대한 심사 등으로 구성됨

- 국가세무총국은 각 기층 세무기관이 관할내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단위가 있다면 그 외국인의 수와 장단기 취업상태와 관계 없이 모두 당해 기업을 단위로 납세관리 대장을 작성토록 지시
- 특히 금년 6월 말까지 각 지역 세무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개인 소득 관리대장 작성을 종결하고 이를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에 보고하도록 요구
- 국가세무총국은 금년 하반기 동안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 II. 중국 개인소득세 세제 현황

### 1.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 법령

- ☐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지난 1980년 제정된 이후 1993년과 1999년 2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2005년 12월 재수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1994년 발표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2005년 12월 수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음
- ☐ 세수납부와 관련하여 1992년 <세수징수 관리법>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1995년과 2001년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
- 동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2년 <세수징수 관리법 실시세칙>이 제정되어 같은해 10월 15일부터 발효
- ☐ 한국과 중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1994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
- ☐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법령은 상술한 <개인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이외에 상당수 법령이 법령해석에 대한 상급기관의 의견을 하급기관에 전달하는 <통지(通知)>가 상당수를 차지
- 이러한 법제 시스템의 미비와 복잡성도 그 동안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인식과 납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현재 세제개혁과 법제개정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법령 현황

### ◎ 기본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
-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 의견에 관한 통지(國辦發[1994]81号  
轉發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加強個人所得稅征收管理意見的通知)
- 개인소득세 관련 약간의 정책에 대한 통지  
(財稅字[1994]020号 關於個人所得稅若干政策問題的通知)

### ◎ 일반규정

- 개인소득세 관련 약간의 정책문제에 대한 회답  
(國稅函[2002]629号 關於個人所得稅若干政策問題的批復)
- 개인소득세 관련 약간의 업무문제에 대한 회답  
(國稅函(2002)146号 關於個人所得稅若干業務問題的批復)
- 개인소득세 관련 유관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發[1999]058号 關於個人所得稅有關政策問題的通知)
-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약간의 문제규정에 대한 통지  
( 國稅發[1994]089号 關於印發《征收個人所得稅若干問題的規定》的通知)

### ◎ 징수관리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잠정방법  
(國稅發[1995]065号 個人所得稅代扣代繳暫行辦法)
- 경외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發[1994]044号 關於境外所得征收個人所得稅若干問題的通知)
- 증치세와 영업세 납부기준 상향조정 후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업무에 관한 통지(國稅發[2003]80号 關於提高增值稅和營業稅起征  
点后加強個人所得稅征收管理工作的通知)
- 의료기구 관계자 소득세 관련 세수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  
([2003]109号 關於醫療機構有關個人所得稅政策問題的通知)
- 기업 채권이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강화업무 관련 통지  
(國稅函[2003]612号 關於加強企業債券利息個人所得稅代扣代繳工作的通知)

##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법령 현황

### ◎ 외국인 관련

- 한중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중한 양국정부 이중과세방지 협정 관련 조문해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 중국내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에 관한 새수협정 및 개인소득세법 집행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在中國境內无住所的个人執行稅收協定和个人所得稅法若干問題的通知 國稅發[2004]97号)
-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약간의 세무행정심사 항목의 취소 및 이양에 관한 후속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取消及下放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以及外籍个人若干稅務行政審批項目的后續管理問題的通知 國稅發[2004]80号)
- 국제기구, 외국정부의 주중 영사관 및 주중 신문기구 고용인원의 개인소득세 징수 방식에 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於國際組織駐華机构、外國政府駐華使領館和駐華新聞机构雇員个人所得稅征收方式的通知 國稅函[2004]808号)
- 외국인 개인이 취득한 친지방문 비용의 개인소득세 면제에 대한 집행표준 문제에 관한 통지( 國稅函[2001]336号 關於外籍个人取得的探親費免征个人所得稅有關執行標準問題的通知)
-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國稅發[1997]54号 明确外籍个人所得稅有關問題)
- 중국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중국내 주거기간 5년 산정문제 관련 통지(財稅字[1995]098号 關於在華无住所的个人如何計算在華居住滿五年問題的通知)
- 대외 하청업체 고용인원의 중국내 하청공사 종사자의 급여, 수입 관련 개인소득세 징수문제(財稅外14号 關於對外國承包商派雇員來中國從事承包作業的工資、薪金收入征收个人所得稅問題)
- 외국인의 중국내 주거기간 관련 임시출급 관련 개입소득세 납부문제에 대한 답변(財稅外字066号 關於外籍人員在中國居住期間臨時离境繳納个人所得稅問題的批復)
- 외국직원의 중국내 주택비용 공제계산 납세 관련 통지(財稅外字021号 關於對外籍職員的在華住房費准予扣除計算納稅的通知)

## 2. 중국 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소득

-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내 주소지가 있거나 주소지가 없는 자가 중국 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민 납세자로 분류
- ☐ 중국 내 주소지가 없고 중국 내 거주하지 않거나 중국내 주소지가 없으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非거주자 납세인으로 분류됨
- ☐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가 중국내 연간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1년 미만일 경우 중국 내 근무기간 중 취득한 중국 내 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지불하는 급여소득의 과세권도 중국 세무당국에 있음
- ☐ 반면, 중국 내 체재기간이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지급한 소득만 중국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며 우리나라 내 발생 급여소득은 우리 세무당국이 과세권한을 보유
- ☐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가 1년 이상~5년 미만 중국 내 근무기간 중 취득한 중국 및 한국 내 모든 급여소득은 모두 중국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대상이 됨
- ☐ 그러나 일시 출국기간 중 취득한 급여에 대해서는 중국 내 기업 또는 개인 고용주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 대상으로 인정
- ☐ 중국 내 주소지가 없는 자의 중국 내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6년째부터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거주기간 5년 초과 시 납세대상 소득은 급여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득 등 전체 소득을 모두 포함

#### 중국 개인소득세 과세 범위

| 중국 내<br>체류기간      | 중국 경내소득 |         | 중국 경외소득 |         |
|-------------------|---------|---------|---------|---------|
|                   | 중국 내 지불 | 중국 외 지불 | 중국 내 지불 | 중국 외 지불 |
| 183일 미만           | 징수      | 면제      | 면제      | 면제      |
| 183일 이상<br>~1년 미만 | 징수      | 징수      | 면제      | 면제      |
| 1년~5년 미만          | 징수      | 징수      | 징수      | 면제      |
| 5년 이상             | 징수      | 징수      | 징수      | 징수      |

### 3. 개인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 중국은 지난해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800위안 상향 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인은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외국인인 4,000위안에서 4,800위안으로 조정됨

□ 현재 중국은 급여소득에 대하여 5~45%까지 9단계의 누진세율을 과세하고 있으며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음

- 개인소득세의 계산식은 “납세액 = (월소득 - 기본 공제액 4,800위안)X적용세율-속성공제수(간편조정 계수)”임

중국의 월 급여소득의 개인소득세율

| 구간 | 월 과세소득액                 | 세율(%) | 속성공제수  |
|----|-------------------------|-------|--------|
| 1  | 500원을 이하                | 5     | 0      |
| 2  | 500위안 초과~2,000위안까지      | 10    | 25     |
| 3  | 2,000위안 초과~5,000위안까지    | 15    | 125    |
| 4  | 5,000위안 초과~20,000위안까지   | 20    | 375    |
| 5  | 20,000위안 초과~40,000위안까지  | 25    | 1,375  |
| 6  | 40,000위안 초과~60,000위안까지  | 30    | 3,375  |
| 7  | 60,000위안 초과~80,000위안까지  | 35    | 6,375  |
| 8  | 80,000위안 초과~100,000위안까지 | 40    | 10,375 |
| 9  | 100,000위안 초과            | 45    | 15,375 |

□ 개인사업자와 도급경영 소득에 대해서는 5~35%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간별 세율을 다음과 같음

- 하기 표에서 1년 과세소득액이라 함은 매 1개 납세연도 소득총액에서 위안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말함
- 계산식은 “납세액 = 과세소득액X적용세율-속성공제수(간편조정계수) = (과세연도 수입총액-필요비용)X적용세율-속산공제수”임

개인사업자와 도급경영 소득의 개인소득세율

| 구간 | 1년 과세소득액               | 세율(%) | 속성공제수 |
|----|------------------------|-------|-------|
| 1  | 5,000위안 이하             | 5     | 0     |
| 2  | 5,000위안 초과~10,000위안까지  | 10    | 250   |
| 3  | 10,000위안 초과~30,000위안까지 | 20    | 1,250 |
| 4  | 30,000위안 초과~50,000위안까지 | 30    | 4,250 |
| 5  | 50,000위안 초과            | 35    | 6,750 |

□ 이 밖에 서비스 소득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20,000위안까지 20% △20,000위안 초과~50,000위안 이하 30% △50,000위안 초과 40%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 원고료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이며 납세액에서 30%를 감면하여 과세
- 노무보수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고, 노무보수소득의 1회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실시하며 구체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
- 특허권 사용료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할당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

#### 4.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 우대혜택 항목

- ☐ 중국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나 실비정산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세의 부과를 면제하고 있음
- 외국인 개인이 非현금형식 또는 실비정산 형식으로 취득하는 주택, 식비, 이사, 세탁비용
- 외국인 개인이 합리적 표준에 의거하여 취득하는 중국내 출장비로 증빙과 출장계획 등을 주관세무기관이 확인 후 면세
- 외국인 개인이 중국 내 고용지에서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지역으로 고향방문 시 연간 2회의 교통비
- 중국 내 언어교육에 대하여 지출하는 언어교육비 및 중국 내 자녀교육비 중 세무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합리적인 부분
- ☐ 해당 공제비용은 원칙적으로 실질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에 포함시킴

### Ⅲ.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강화 배경과 전망

#### 1.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강화 배경

##### ☐ 법제화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 세제개혁 강화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4년부터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1단계로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 소득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세수징수 강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徵收管理法)을 새로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세수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 WTO 가입 이후 외국 관련 세제환경 변화

- 과거 중국 내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세수징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전세계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으로 부상하며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이 크게 증가
- 또한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확대에 따른 중국정부의 자신감도 외국인 관련 세수징수 관리강화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일 논의 등 우대혜택의 축소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시스템 하에서 납부대상 세원의 관리와 징수강화는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 외국기업 및 개인의 탈루소득 증가 추정

-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세제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외국기업의 세금탈루 현상 통제에 어려움을 인식
- 특히 외국인 관련 세수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탈루소득의 증가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 지역별, 기관별 세금징수를 위한 공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 있지 않아 세원 발굴과 징수의 효과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및 전망

#### ☐ 외국인 개인소득 납세정보 등록 추진

-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의 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우선 납세신고 의무대상자를 중심으로 납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외국인 개인별 과세정보 등록 이후 동태적 관리를 추진하여 변동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할 계획

#### ☐ 원천소득 징수자 관리 강화

- 외국인 개인별 세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당국의 관리가 상

대적으로 용이한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관할세무기관은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납세신고에 있어 고용단위의 역할과 의무를 확대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동시 신고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공한 소득정보, 납세정보에 대하여 교차 대조하고 조사 확인 추진

□ 유관기관과의 세수관리 공조시스템 구축

-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유관기관 간 납세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시스템의 구축
- 한편 세무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서비스 시스템(원천징수 의무자 사용)과 기초정보관리 시스템(세무국 사용)의 개발을 추진

□ 다국적기업 근무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관리 강화

- 2005년 12월말 현재 중국정부가 승인한 외상투자기업 수는 총 552,942개사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국적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전망
-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개인소득세 실시조례>에 따르면 연소득 12만위안 이상의 대상자를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어 외국인 대부분은 자진납세 대상자에 포함됨

## IV. 중국 내 외국인 개인소득세 납세현황 및 탈루사례

### 1. 중국 내 외국인 개인소득세 납세현황

- ☐ 2004년 중국 전체 세수수입은 2조 5,718억위안이며 이중 개인소득세는 1,731.1억위안으로 나타남
- ☐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하고 있으며 증치세(增值稅), 영업세, 기업소득세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세수 소득원에 해당
- ☐ 중국 내 전체 소득 중 급여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어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중국 내 외국인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중국 전체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2. 중국 내 외국기업 직원의 개인소득세 탈루 적발사례

- ☐ 폭스바겐 社 사례
- ☐ 창춘(長春) 세무국은 2002년 一汽-大衆(第一汽車와 폭스바겐의 합작회사)의 외국직원 입국이 빈번하나 납세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
- ☐ 추후 52명의 외국직원에 대한 세무감사를 통하여 574만위안의 개인소득세를 추가 징수 조치

□ 마이크로소프트社 사례

- 베이징시 세무국은 2001년 출판사, 잡지사, 외상투자기업 및 영화산업에 대한 중점 세무감사 중 마이크로 소프트社의 원천징수 누락 부분 적발
- 마이크로소프트社가 주식청약권 차액에 대한 개인소득 납세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5,100만위안의 추가 개인소득세 추징
- 그러나 베이징시 세무국은 직원의 탈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벌금부과도 없었음

□ 독일계 某 콘크리트社 사례

- 1997년 Z市 세무국은 관할지역 내 某 콘크리트社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3명의 소득이 기타 외국기업 직원대비 과소신고된 것을 발견
- Z市 세무국은 某 콘크리트社 외국인 직원에 <기한내 개정통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본사 발급 原 급여명세서 △본사의 해외주재 규정 △출장규정 △합자기업의 주재원 급여규정 등을 함께 요구
- Z市 세무국은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미납부 세금 16만위안과 체납금 7만 위안을 추징
- 某 콘크리트社의 모기업 대표는 현지법 미준수에 따른 추징금과 체납금을 해당직원이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합자기업이 우선 대출방식으로 동 금액을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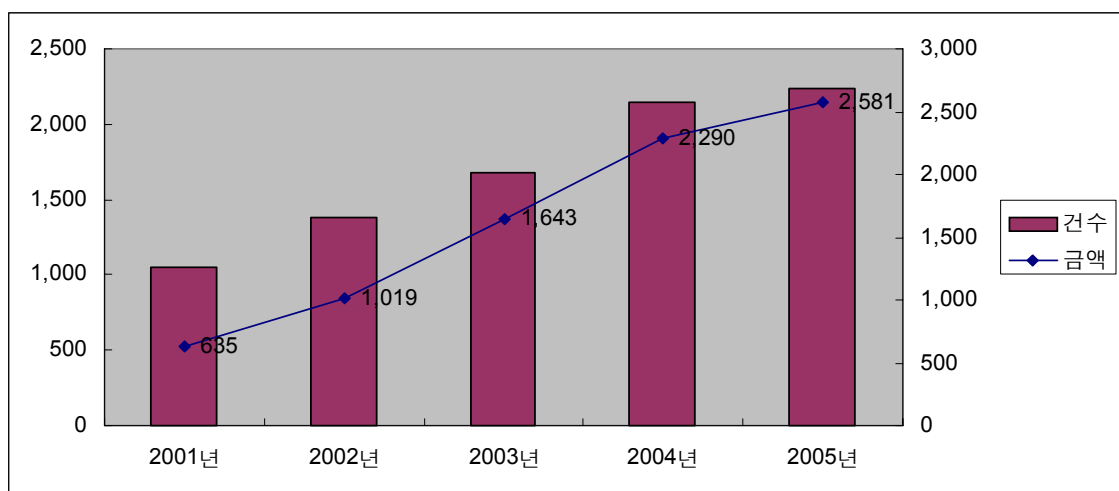
## V. 우리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 1. 급변하는 중국의 세계 환경변화

- 최근 중국의 세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각별한 유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화 진전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축소 추진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금년부터 시작되는 11.5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수우대혜택이 대폭 감소됨과 동시에 보다 엄격한 세금납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우리의 1대 투자대상국으로 최근 우리의 대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한 인식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최근 5년간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건수)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의 對중국 건당 평균투자 금액은 2004년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여전히 소액투자가 다수를 차지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경영관리 인원의 부족에 따라 세무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인적교류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은 우리 국민의 최다 방문 외국이며 중국 방문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향후 인적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개인소득세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중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만명, %)

| 년도   | 방한 중국인 |      |      | 방중 한국인 |       |      |
|------|--------|------|------|--------|-------|------|
|      | 방문자 수  | 증가율  | 비중   | 방문자 수  | 증가율   | 비중   |
| 1992 | 8.7    | 10.1 | -    | 4.3    | 186.6 | -    |
| 2000 | 44.3   | 39.8 | 8.3  | 134.5  | 26.0  | 13.2 |
| 2001 | 48.2   | 8.9  | 9.4  | 167.7  | 25.6  | 14.9 |
| 2002 | 53.9   | 11.9 | 10.1 | 212.4  | 32.7  | 15.8 |
| 2003 | 51.3   | -4.9 | 10.8 | 194.5  | -8.2  | 17.1 |
| 2004 | 62.7   | 22.4 | 10.8 | 284.5  | 46.3  | 16.8 |
| 2005 | 84.3   | 21   | 14   | 354.5  | 24.6% | -    |

※ 출처 : 방한 - 한국관광공사, 방중 - 중국 국가여유국

\* 방중자 수는 제3국 경유 방중 한국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 (한국관광공사 통계는 중국이 제1 목적지일 경우만 계산)

## 2. 향후 대응방안 및 시사점

### ☐ 세무관련 법제 동향 주시

-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세무관리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 대사관, KOTRA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현지 세무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한국상회 및 동종업종 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방법 모색

### ☐ 납세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탈세는 범법행위로 주재국 법률에 의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 해당국의 세법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시적인 개인소득세 면제 비용항목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
- 최근 중국의 세무제도가 체계화되고 있어 과거의 편법이나 관례가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함

### ☐ 납세의 현실화 추진

- 중국 세무당국은 금년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대장 작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납부과세가 상식적인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발 시 추징금액에 따른 막중한 부담이 예상됨
-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탈세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金的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 그 동안 과소 신고한 기업과 개인은 점진적으로 납부세금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체재인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바, 기업차원의 지원 방안마련이 요구됨

#### □ 기업의 개인소득 관리 강화 노력

- 금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전원전액관리 원천징수관리 잠정 방법(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繳申報管理暫行辦法)>이 실시되어 기업의 개인소득세 관리의무가 강화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대로 원천징수세액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납부관련 기장증빙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규정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부담이나 원천징수의 의무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기업차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함
-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탈세행위에 대하여 원천징수자에게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金的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 단기체재 인원 에 대한 세무관리 필요

- 최근 인적교류 증가에 따라 단기출장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에 대한 유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단기출장자의 연간 중국 체재일수가 183일을 이상이거나 중국내 고용주 또는 중국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 소득세 납부대상자에 해당됨
- 중국 내 공사현장이 있고 추정이익 과세방식으로 기업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공사현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파견자는 체재 일수가 183일 이내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
-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중국 내 대표처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중국 내 출장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더라도 체재일수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 기업의 대외 이미지 관리

-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 시 다국적 기업의 고소득 관리자가 우선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국적 기업은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적발시 언론과 소비자의 공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개인소득세 탈루가 기업 이미지 손상과 매출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
- 특히 외국기업에 대하여 중국기업과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준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참고】 최근 개정 주요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국무원 1994. 1. 28]

[국무원 2005. 12.29]

**제1조** 본 시행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에 따라 규정되었다.

**제2조** 세법 제1조 첫 문단의 목적상 “중국내 주소를 둔 개인”이란 등록된 항구적 주소 가족이나 경제적이해등을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 세법 제1조 첫 문단의 목적상 “중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이란 한 과세연도에 365일동안 중화인민공화국내에 거주자였음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밖으로의 일시적인 여행 일수는 일수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앞 문단의 목적상 “중화인민공화국 밖으로의 일시적인 여행”이란 동일 과세연도중에 여행기간동안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수차의 여행에서 누산하여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부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제4조** 세법 제1조의 첫째 및 두번째 문단의 목적상 “중국내 원천에서 얻은 소득”이란 소득원천이 중화인민공화국내인 소득을 의미하며 “중국의 원천에서”란 소득의 원천이 중화인민공화국외인 소득을 의미한다.

**제5조** 지급지가 중화인민공화국내이건 아니건, 다음의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이다.

① 사무실의 보유, 고용, 계약의 수행등을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제공된 개인적 용역에서 얻는 소득

②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재화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

③ 건물, 토지사용권등 중국내 재산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 또는 중국내의 기타자산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

④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각종 실시권의 허여로 얻는 소득

⑤ 중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이나 개인으로 부터 수취하는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소득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나 1년이상 5년미만 거주하는 개인의 중화인민공화국외의 원천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있는 회사, 기업이나 기타의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5년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6년째부터 중화인민공화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한 과세연도에 연속적으로 누적

적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밖의 고용주가 지불하고 그 고용주의 4중화인민공화국내의 시설이나 사업장소에서 분마하지 않는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제8조** 세법 제2조에서 언급한 소득종류의 범위는 아래에 정하는 바와 같다.

① “급여 및 임금에서 얻는 소득”이란 급여, 임금, 상여금, 연말특별급 이익배분, 보조금, 수당 및 사무실의 보유나 고용으로 개인이 얻는 사무실의 보유나 고용에 관련된 기타의 소득

② 개인상공업자의 제조나 영업활동에서 얻는 소득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산업, 수공업, 건설, 운송, 상업, 음식료업, 용역업, 수선업 및 기타 산업에서의 제조나 영업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개인상공업자가 얻는 소득

㉡ 관련정부당국의 비준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대가를 받고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의 용역활동에 종사하여 개인이 얻는 소득

㉢ 개인이 개인상공업에 종사하여 얻는 기타의 소득

㉣ 위의 개인상공업자 및 개인의 제조 및 영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과세 소득

③ “기업이나 기관의 계약 등에서 얻는 소득”이란 개인이 매월 또는 때때로 얻는 급여 및 임금성격의 소득을 포함하여 계약이나 임차계약 또는 동계약이나 임차계약의 양도로 개인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④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서 얻는 소득”이란 개인이 설계, 장식, 설치, 제도, 연구실험, 기타의 실험,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신문, 방송, 통역, 교정, 회화 및 서예, 조각, 영화 및 TV, 녹음, 녹화, 쇼, 연극, 광고, 전시 및 기술용역, 안내용역, 중개용역, 대리용역 및 기타 인적용역에 종사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⑤ “작가의 보수”란 자신의 작품을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에 발표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⑥ “사용료에서 얻는 소득”이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실시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에는 작가의 보수(고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⑦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에서 얻는 소득”이란 개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 및 지분권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⑧ “채화의 임대료 얻는 소득”이란 건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운송수단 및 기타 채화의 임대에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⑨ “채화의 이전으로 얻는 소득”이란 유통가능한 증권, 지분권, 건축물, 토지사용료, 기계, 설비, 운송수단 및 기타의 채화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⑩ “우발소득”이란 포상, 수상 및 복권의 당첨으로 얻는 소득 및 기타 일시적인 성격의 소득을 의미한다.

과세유형을 결정하기 어려운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주관세무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지분의 양도로 얻는 개인 소득에 대한 부과징수방법을 재정부가 별도로 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 개인이 얻는 과세소득에는 현금, 현금 이외의 기타의 재화 및 유통가능한 증권을 포함한다. 소득을 현금이외의 재화로 받는 경우, 과세소득금액은 취득한 전표상에 정해진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에 대한 영수증이 없거나 표시된 가격이 명백히 낮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그 지방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소득이 유통가능한 증권의 형태인 경우 과세소득금액은 액면가 및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11조** 세법 제2조의 ④항 목적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의 특정 지급액이 매우 높다”는 구절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지급액이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세법에 따라 납부할세액 계산후, 앞문단에서 언급한 20,000위안을 초과하나 5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추가로 부과한다.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의 100%를 추가로 부과한다.

**제12조** 세법 제4조의 ②항 목적상 “국채의 이자”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이자소득을 의미하며, “국가가 발행한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발행된 재정증권을 보유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이자소득을 의미한다.

**제13조** 세법 제4조의 ③항 목적상 “국가통일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이란 공무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수당, 원사수당, 자격이 오랜 원사수당과 공무원조례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수당 및 보조금을 의미한다.

**제14조** 세법 제4조의 ④항 목적상 “복지비”란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기업, 기관, 정부대리인 및 사회단체가 할당할 복지비나 노동조합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 생계보조금을 의미하며 “구호금”이란 국가의 민정부문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계곤란보조금”을 의미한다.

**제15조** 세법 제4조의 ⑧항의 목적상 “중국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외교관, 영사 및 기타의 직원이 얻는 소득”이란 “외교특권 및 면책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조례”와 “영사특권 및 면책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조례”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제16조** 세법 제5조에서 언급한 개인소득세의 감면 범위 및 기간을 성.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17조** 세법 제6조의 첫문단 ②항의 목적상 “원가” 및 “비용”이란 모든 직접비용, 원가로 할당된 간접비용뿐 아니라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및 납세자가 제조 및 영업에 종사하는 동안 발생한 재무비용을 의미하며, “손실

”이란 납세자가 제조 및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영업비용을 말한다.

제조나 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과세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납세자의 과세소득금액은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18조** 세법 제6조의 첫 문단 ③항에서 말한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이란 납세자가 납세의무자가 도급경영, 임차경영계약의 규정에 따라 분배받은 경영이윤과 임금, 급여 성격의 소득을 가리키며 “필요경비의 공제”란 매월 1,600위안의 공제를 의미한다.

**제19조** 세법 제6조의 첫 문단 ⑤항의 목적상 “재화의 원가”란

① 유통기능증권의 경우에는 구입시점의 규정에 따른 구입가격 및 관련비용

② 건물의 경우에는 건설비용이나 구입가격 및 관련비용

③ 토지사용권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지불한 금액 토지개발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

④ 기계, 설비, 차량 및 선박의 경우에는 구입액, 운임, 설치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을 의미하며

⑤ 기타 재화의 경우, 원가는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납세자가 재화의 원가에 관한 완벽하고 정확한 증빙철을 제공하지 않아 재화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이 재화의 원가를 결정한다.

**제20조** 세법 제6조의 첫 문단 ⑤항의 목적상 “합리적 비용”이란 판매시점의 규정에 따라 지불한 관련비용을 의미한다.

**제21조** 세법 제6조 첫 문단 ④항 및 ⑥항의 목적상 “매지급액”이란

①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괄지급으로 발생하였다면 그 일괄지급액, 소득이 계속적이고 동일업무에 관련되었다면 1개월동안 발생한 소득

② 작가의 보수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매 발행시 얻는 소득

③ 사용료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각 실시권의 허여로 얻는 소득

④ 재화의 임대료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 기간동안 얻는 소득

⑤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으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 또는 특별 배당이 지불되는 각 시점에 얻는 소득

⑥ 우발소득의 경우에는 수취소득의 매지급액을 의미한다.

**제22조** 재화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은 1회의 재화의 양도가액에서 재화의 원가 및 합리적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계산 납부한다.

**제23조** 둘이상의 개인이 동일항목의 소득을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액은 본 세법에 따라 비용을 각기 공제한 후 각 개인이 얻은 소득을 기초도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24조** 세법 제6조 두번째 문단의 목적상 “교육 및 기타 공공복지수행에 기부된 개인소득”이란 개인이 교육이나 기타 공공복지수행 및 중화인민공

화국 자연재앙을 입은 지역에 사회단체나 정부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소득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기부액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신설)** 국가규정에 따라 단위가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과 개인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용, 기본의료보험비용, 실업보험비용, 주택공적금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금액중에서 공제한다.

**제26조** 세법 제6조의 세번째 문단에서 말한 “국외에서 취득한 급여 및 임금소득”이란 중화인민공화국밖에 사무실의 보유나 고용으로 발생하는 급여 및 임금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제27조** 세법 제6조의 세번째 문단에서 말한 “추가비용공제”란 매달 1,600원을 공제한 기초에서 본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한 액수의 비용을 추가 공제함을 의미한다.

**제28조** 세법 제6조의 세번째 문단에서 말한 “동 비용공제의 적용범위”란

- ①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 ② 기업, 기관, 사회단체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리기구에서 일하기 위하여 고용된 외국의 숙련공
- ③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화인민공화국밖에 사무소의 보유나 고용으로 인하여 급여 및 임금소득을 얻는 개인
- ④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의 개인

**제29조** 세법 제6조의 세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추가비용공제기준은 3,200위안이다.

**제30조** 화교 및 홍콩, 마카오와 대만동포는 제26조, 제27조 및 28조를 참고하여 취급한다.

**제31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으나 중화인민공화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내 및 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32조** 세법 제7조의 목적상 “외국과세당국에 납부한 소득세”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 및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한다.

**제33조** 세법 제7조의 목적상 “이 세법에서 달리 납부할 세액”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원천에서 납세자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본 세법의 규정된 비용공제기준과 세율에 따라 다른 국가나 지역 및 각 소득종류별 별도로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의미한다. 동일 국가나 지역내의 다른 소득종류에서의 납부할세액 합계액은 그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공제한도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밖의 국가나 지역에서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이 앞 문단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액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이 그 국가

나 지역에 대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그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동 초과액은 이후 5년의 후속 과세연도중에 그 국가나 지역의 공제한도 미사용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4조** 세법 제7조에 따라 납세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에 납부한 개인 소득세액의 공제를 승인을 신청할 때 납세자는 중화인민공화국외의 과세당국이 발행한 납부영수증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원천징수대리인이 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대리인은 이세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세액을 재기에 국고에 납입하고 장래의 조사에 대비하여 특별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앞문단의 목적상 “지급”이란 송금에 의한 현금지급, 계정대체에 의한 지급 및 유가증권 형태로서 지급, 물건 및 기타 형태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36조**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상황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 1) 연 소득이 12만위안 이상인 자
- 2) 중국경내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임금, 급여소득을 얻은 자
- 3) 중국 경외에서 소득을 얻은 자
- 4) 과세소득금액이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자.
-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정황이 있는 자.

연 소득이 12만위안이상의 납세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곳 및 기타 관련사항의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다.

**제37조** 세법 제8조에서 말 한 전원전액원천 징수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다음 달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그 지불소득 개인의 기본정보, 지불소득액수, 원천징수세액의 구체적 액수와 총액 및 기타관련 세금정보를 발송해야 한다.

전원전액 원천징수 신고의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다.

**제38조**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납세자가 신고할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원천징수된 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9조** 세법 제2조에 열거된 둘 이상의 유형의 소득을 동시에 얻는 납세자는 각 유형별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세법 제2조의 ①항, ②항 또는 ③항의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세액을 계산, 납부하기 위하여 동일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한다.

**제40조** 세법 제9조의 두번째 문단의 목적상 “특정산업”이란 채굴산업, 해운산업, 심해어업 및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의 산업을 말한다.

**제41조** 세법 제9조의 두번째 목적상 “년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별로 선분납하는 조세”란 본 법 제38조에 열거된 특정산업의 직원 및 작업원의 급

여 및 임금소득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월별로 선납하는 것을 의미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과세연도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과세연도기간중의 총급여 및 임금소득의 12개월도 평균하여 계산하며 그 시점에 초과납부액을 환급하고 부족액은 납부한다.

**제42조** 세법 제9조의 네번째의 목적상 “세액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되어야 한다”란 기업과의 계약 등의 활동에서 과세연도 말에 일괄지급으로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그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3조** 세법 제10조에 따라 외화소득은 과세소득계상을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납세영수증이 발행된 월의 전월말일의 환율로 인민폐로 환산한다. 월별로 세액을 성납한 외화소득금액이나 소득이 발생한 때시점의 소득은 다시 환산할 수 없다. 세액이 납부될 소득부분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은 동소득부분을 직전과세연도 말일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44조** 세무기관이 세법 제11조에 따라 원천징수대거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때 세무기관은 원천징수대리인에게 월별 환급증명을 발행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리인은 그 증명에 의해 지정된 은행에 국고환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5조** 개인소득세신고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 및 개인소득세 납부영수증의 표준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하여 정한다.

**제46조** 세법 및 본 세칙 목적상 “과세연도”란 서력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47조** 1994 과세연도 개시부터 개인소득세는 세법 및 본 세칙에 따라 계산, 부과징수된다.

**제48조** 본 조례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해석한다.

**제47조** 이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1987. 8. 8일자로 국무원이 공표한 “중국내 외국이 얻는 임금 및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 개인소득세 전원전액관리 원천징수 신고관리 잠행방법

**제1조**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납부 행위를 규범화하며, 납세의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함)및 그 시행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관법이라 함)및 그 시행세칙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개인소득세의 전원전액원천징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개인소득세의 전원전액원천징수신고란(이하, 원천징수납부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단위에 속하는 자이든지, 지급하는 과세대상소득 금액이 납세기준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다음 달 이내에, 관할세무기관에 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이하 개인이라 함)기본정보와 지급한 소득항목의 금액, 원천징수한 세액 및 조세관련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원천징수의무자란 개인에게 과세대상소득을지급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4조** 개인소득세의 전원전액원천징수신고제도를 시행하는 과세대상소득에는 아래의 소득이 포함된다.

- (1) 급여소득
- (2) 노무보수소득
- (3) 원고료소득
- (4) 특허권사용료소득
- (5) 재산임대소득
- (6)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7) 재산양도소득
- (8) 우연소득(일시재산소득)
- (9) 국무원재정부문이 징세하기로 확정한 기타의 소득

**제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관할세무기관에 아래에 열거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명, 신분증종류 및 신분증번호, 직무, 호적소재지, 유효한 연락전화번호, 유효한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에 열거하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비임시직 직원(주주 및 투자자는 제외한다): 업무단위의 명칭
- (2) 주주 및 투자자: 회사의 투자총액(납입자본금)및 개인의 투자액등
- (3) 중국 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임시직 직원과 비임시직 직원을 포함한다): 외국어 성명 및 국적 또는 지역, 출생지(중문, 외국어), 거류증번호(대만동포의 신분증번호 및 회향증번호), 노동직업증 번호, 직업, 국경내 업무, 국경외 직무, 입국시기, 근무기한, 예정 중국체류기한, 예정 출국시기, 중국

국경내 근무단위의 명칭 및 세무등기증번호, 국경내 근무단위의 주소와 우편번호 및 연락전화번호, 국경외 소속단위의 명칭(중문, 외국어), 국경외 소속단위의 주소(중문, 외국어), 소득의 지급지역(중국 국경내지급 및 국경외의 지급을 모두 포함한다)등.

저축기구가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 및 증권기구가 회사채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회사채이자소득과 상장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성명, 신분증유형 및 신분증번호,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한 세액 등.

각 지역은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와 관리업무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인 기초정보등기표>를 제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제5조에 규정한 개인의 기초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 및 기초정보에 변화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다음 달 원천징수를 할 때에 변경된 정보를 관할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매 개인별로 <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서>(첨부분서1) 및 <개인소득지급명세서>(첨부분서2)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에 대하여 정보화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지급명세서>를 <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서>에 병기할 수 있다.

**제8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할세무기관에 <원천징수개인소득세신고서> 및 <개인소득지급명세서>와 개인의 기초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하는 다음 달 말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할세무기관은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관련자료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소득세신고서>와 <개인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 매 개인별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작성이 불완전한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다시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우편, 전자문서 또는 기타의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다.

**제12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소득세신고서> 및 <개인소득지급명세서>와 개인의 기초정보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증빙의 발행을 요구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증빙을 발급한 다음 달에 원천징수납부할 때에 그 발행한 원천징수증빙기록을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할세무기관은 반드시 "一?式"관리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천징수의무자 코드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명칭, 등기증유형, 세무등기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업종, 경제유형, 단위주소, 우편번호, 법정대표자(단위책임자)와 재무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세무등기기관, 세무등기일자, 주관세무기관

(2) 전(全) 연도의 직원 수, 납세의무자의 수 및 납부할 소득세액의 총합(소득의 종류에 따라 분별하여 종합한 것), 비과세소득, 납부할 세액(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한 것), 감면세액,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할세액 또는 추가징수할 세액, 체납금, 벌금 등.

**제15조** 주관세무기관은 반드시 개인신분증번호 혹은 개인납세코드를 표식으로 하여 개인의 기초정보, 소득 및 납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소득과 납세에 관한 관리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제16조** 세무기관은 반드시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납부한 후의 개인에 대하여, 그 전(全)년도의 실제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납세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는 조세관련정보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신고와 개인이 신고한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차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대로 원천징수세액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납부관련 기장증빙 및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징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1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및 <개인소득지급명세서>와 개인의 기초정보 등 관련 자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징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와 개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와 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직접 이를 책임지는 관리인원과 기타의 책임자에 대하여 당해 소속단위 혹은 관련단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21조** 기타의 조세법률 위반행위는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와 개인에 대한 선전활동 및 정책교육, 자문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과 각 지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본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세무총국이 그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5조** 본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의 규정이 본 방법의 규정과 저촉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발령 관련 통지

國稅發[2005]12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 내부 단위: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업무를 가일층 보장 및 규범화하고, 개인소득세의 과학적이고 정밀화한 관리를 추진하며,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 질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법, 조세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징수관리 실황을 결부하여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발령하니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에 대해서 총국에 적시에 보고하기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2005년 7월 6일

###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 제1장 총 칙

**제1조**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기관의 징수관리를 일층 보장 및 규범화하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과학화, 정밀화를 추진하며, 징수관리 효율과 질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약칭) 및 기타 조세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장 및 규범화하기 위하여 관리제도의 건전화에 힘써야 하고 징수관리수단의 완벽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중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인收入 서류함 관리제도, 원천징수 명세장부 제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동시 신고제도, 사회 각 부서와의 협력, 협조제도를 구축하고 통일적인 개인소득세 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정보기술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개인소득세 관리를 보장하고 고 소득자에 대한 중점관리, 세원 원천관리, 전민 전액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여야 한다.

#### 제2장 개인收入 서류함(檔案) 관리제도

**제3조** 개인소득 서류함 관리제도란, 세무기관이 매개 납세자의 개인 기초

정보, 소득정보와 납세정보,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해 서류함을 건립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납세자에 대해 동적 관리를 실행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제4조** 성 이하(성급 포함) 각급 세무기관 관리부서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소득과 납세 서류함을 건립하여 “一戶式” 동태 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성 이하 (성급 포함) 각급 세무기관 관리부서는 부동한 유형의 납세자를 구분하여 하기 내용에 따라 상응한 기초정보 서류함을 건립하여야 한다.

(1) 직원 납세자(주주, 투자자, 외국인은 제외)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학력, 직업, 직무, 메일 주소, 유효 연락처, 유효 통신주소, 우편번호, 호적 소재지,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중점납세자 여부.

(2) 비 직원 납세자(주주, 투자자 제외)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메일 주소, 유효 연락처, 유효 통신주소(사업단위 또는 가정주소), 우편번호, 임직단위 명칭,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중점납세자 여부.

(3) 주주, 투자자(개인 독자, 합동기업 투자자 제외)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 국적,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유효 통신주소, 우편번호, 호적 소재지, 유효 연락처, 메일 주소, 회사 자본금(투자)총액, 개인 자본금(투자)총액,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중점납세자 여부.

(4) 개인 독자기업과 합동기업의 투자자, 개인사업자, 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경영자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개인사업자(또는 개인 독자기업, 합동기업, 도급·임차한 기업·사업단위) 명칭, 경제유형, 업종,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유효 연락처, 세무등기증 번호, 메일 주소, 소득세 징수방식(인정과세, 장부검사과세 여부), 주관세무기관, 중점납세자 여부.

(5) 외국인(직원과 비 직원 포함)의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성명(중문·영문), 성별, 출생지(중문·영문), 생년월일, 경외 주소(중문·영문), 국적 또는 지역, 신원증명 유형, 신원증명 번호, 거류허가 번호(또는 대만동포증명번호, 귀향증 번호), 취업증 번호, 직업, 경내 직무, 경외 직무, 입국시간, 임직기간, 중국 예정 체류기간, 예정 출국시간, 경내 임직단위 명칭 및 세무등기번호, 경내 임직단위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기타 임직단위(주소, 전화, 연락방식 포함) 명칭 및 세무등기번호, 우편번호, 연락처, 경내 초빙 및 계약체결 단위 명칭 및 세무등기번호,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경외 파견단위 명칭(중문·영문), 경외 파견단위 주소(중문·영문), 지급지(경내지급, 경외지급 여부 포함), 중점납세자 여부.

**제6조** 납세자 서류함의 내용은 하기 자료에서 취득한다.

- (1) 납세자 세무등기사항
- (2)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와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
- (3) 세금 원천징수 증빙
- (4) 개인소득세 납세신고서
- (5) 사회공공부서에서 제공한 관련 정보
- (6) 세무기관의 납세조사상황과 처벌기록
- (7) 세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기타 자료와 납세자가 제공한 기타 정보자료.

**제7조** 세무기관은 서류함내용에 대해 적시에 업데이트와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정보화수준과 징수관리능력의 제고 및 개인소득의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서류함 관리범위를 부단히 확대하여 나중에全民 전액 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서류함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여 개인소득세 관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중점납세자, 중점업종과 중점기업의 개인서류함자료에 대해 대조분석과 납세평가를 진행하여 세원 변화상황과 원인을 찾아내고 적시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여 징수 빈틈을 없애야 한다.

### 제3장 원천징수 명세장부 제도

**제9조** 원천징수 명세장부 제도란, 세무기관이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모든 기초 정보, 지급한 개인소득과 세금 원천징수 명세정보 및 기타 관련 세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매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류함을 건립하여 동적 관리의 후속 실시에 기초를 닦아놓는 하나의 제도이다.

**제10조** 세무기관은 세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명세장부를 설치하고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납세자료에 대해 세무기관은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와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를 개인별 항목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내용이 완비하지 않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로이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미 정보화관리를 실행한 경우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에 병합시킬 수 있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에는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상황을 기입하고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에는 과세소득을 지급하였지만 납세표준에 미달하는 납세자의 상황을 기입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송부한 개인소득 지급상황과 동기 재무제표를 교차 대조하여 상호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13조** 세무기관은 매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류함을 건립해야 한다.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명칭, 세무(등록)등기증 번호, 전화번호, 메일 번호, 업종, 경제유형, 단위 주소, 우편번호, 법정대표자(단위책임자)와 재무 주관인원의 성명 및 연락처, 세무등기기관, 등기증서 유형, 증서발급일자, 주관세무기관, 과세소득액(소득 항목별로 집결), 면세소득, 의무납세액(소득 항목별로 집결), 납세인원수, 이미 납부한 세액, 보완(환급)해야 세액, 감면세액, 가산금, 벌금, 납세증빙 번호 등.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 서류함 내용은 하기 자료에서 취득한다.

- (1)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세금 등기사항
- (2)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와 《개인소득 지급 명세서》
- (3) 세금 원천징수 증빙
- (4) 사회공공부서에서 제공한 관련 정보
- (5) 세무기관의 납세조사상황과 처벌기록
- (6) 세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기타 자료.

#### 제4장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동시 신고제도

**제15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동시 신고제도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 제출한 요구에 따라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진행하고 세무기관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한 소득정보, 납세정보에 대하여 교차 대조하고 조사 확인하는 일종의 제도이다.

**제16조** 세법과 그 실시조례, 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주관세무기관에 자체로 납세신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신고 접수시 반드시 신고기한, 과세항목, 적용세율, 세금 계산 및 관련 자료의 완벽성과 정확성에 대해 초보심사를 진행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시

에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은 동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교차 대조와 평가분석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사회 각 부서와의 협력협조 제도**

**제19조** 사회 각 부서와의 협력협조 제도란, 세무기관이 개인소득 및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와 관련한 각 부서와 협력협조 제도를 건립함을 가리킨다. 이로서 적시에 세원과 납세 관련 정보를 장악하고 공동으로 세무협조, 세수보호조치를 제정 및 실시하며 사회적으로 세무협조, 세수보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하기 부서와의 협조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公安, 검찰, 법원, 공상, 은행, 문화체육, 재정, 노동, 부동산관리, 교통, 감사, 외환관리 등 부서.

**제21조** 세무기관은 관련 부서와의 협력협조 보강을 통하여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중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公安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출입국 상황 및 중국 경내 임시 거류상황을 파악하여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를 실시하며 또한 개인이 차량구입 등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공상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납세자 등기등록 변화상황과 주식제기업의 주주 및 자본금 변화 등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각종 공연, 경기 수상 등 정보를 파악하고 공연주최단위와 체육단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4) 부동산관리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가옥매매, 임대 등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5) 교통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택시, 운송차량 및 그 운영 등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6) 노동부서와의 연락을 통하여 중국 경내 주소가 없는 개인의 취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와의 정보공유 및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점차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제23조** 각급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법 지식의 홍보 및 보급, 국민의 의법 납세의식의 부단한 제고를 하나의 장기적인 기초업무로 삼아 높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징수관리의 업무요구,

사회적인 관심 분야와 현지 징수관리의 중점을 결부하여 상기 부서와의 밀접한 협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밀한 홍보사업계획을 제정하고 각종 홍보매체와 루트를 충분히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6장 정보화건설 추진

**제24조** 각급 세무기관은 금세공정 제3기의 총체적 구상을 기초로 “一體化” 요구와 “통일 계획, 통일 표준, 중점 돌출, 분포 실시, 자원 종합, 실효 추구, 관리 보장, 안전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정보화건설을 가일층 다그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一體化건설의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기타 세목의 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업무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개발하고 개인소득세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특징에 따라 총국은 우선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원천징수의무자 사용)와 기초정보관리(세무국 사용) 두 개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한다.

제26조 원천징수 시스템(원천징수의무자 사용)에 대한 요구는 아래와 같다.

-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세금신고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원천징수납세자가 현유의 재무 등 프로그램에서 관련정보를 인도입력시킬 수 있어야 한다.
- (3) 세금을 자동 계산하고 각종 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 (4) 다양한 신고방식을 지지하여야 한다.
- (5) 원천징수의무자가 통계, 조회, 프린트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 (6) 《세금 원천징수 증빙》프린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7)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명세서 신고 접수에 편리해야 하고 관련 기초데이터자료를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파악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초정보 관리시스템(세무국 사용)에 대한 요구는 아래와 같다.

- (1) 개인소득 납세자별 서류함을 건립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의 기초정보와 소득정보 및 납세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둔다.
- (2) 개인이 두 곳 이상에서 취득한 소득정보와 납세정보를 징수관리 부서에 전송한다.
- (3) 납세자별 서류함에서 고 소득의 개인, 고 소득업종, 중점납세자, 중점

원천징수의무자를 추출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4) 납세자의 소득, 납세 관련 정보에 대한 집결 대조를 통하여 납세자 신고상황의 진실성을 판단한다.

(5) 각종 통계지수와 표준에 대한 설정 및 통계결과에 대한 이용을 통하여 개인소득세 관리 보강과 정책 완벽화에 정책결정근거를 제공한다.

(6) 각 부서와의 데이터 응용 접속장치를 설치하여 기타 세금과 비용의 징수에 정보를 제공한다.

(7)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납세증명》을 프린트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각급 세무기관은 현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프로그램의 정리조합을 잘하여야 한다. 성급 및 그 이하 각급 세무기관은 원칙상 자체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다.

## 제7장 고소득자에 대한 중점관리 보강

제29조 세무기관은 하기 인을 중점납세자 범위에 귀속시켜야 한다. 금융, 보험, 증권, 전력, 전신, 석유, 석유화공, 담배, 항공, 철도, 부동산, 학교, 병원, 도시 수도·가스 공급, 출판사, 도로관리,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하이테크기업, 중개기구, 체육구락부 등 고소득업종의 인원; 사영 경제 투자자, 인기배우, 유명가수, 체육계 스타, 모델 등 고소득개인과 중국에 와서 임시공연을 진행하는 자.

제30조 각급 세무기관은 하기 인원에 대하여 일정 수의 개인을 택하여 중점납세자로 정하고 중점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소득이 비교적 많은 자
- (2) 지명도가 비교적 높은 자
- (3) 소득원이 비교적 많은 자
- (4) 소득 항목이 비교적 많은 자
- (5) 고정단위가 없는 프리랜서
- (6) 세수 징수관리에 영향이 비교적 큰 자.

제31조 각급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에 대해 회전 동적 관리방법을 실행하고 매년마다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중점납세자를 증가하고 중점납세자 관리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나중에 전민 전액 관리를 실행하도록 한다.

제32조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에 대해 개인별로 전문서류함을 건립하고

중점관리를 실시하며 수시로 소득상황과 납세 변화상황을 추적하여야 한다.

**제33조** 각급 세무기관은 서류함을 통해 관리하는 중점납세자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중점납세자의 소득상황과 납세상황을 대조하고 평가분석하며 그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관리 빈틈을 없애야 한다.

**제34조** 성급(계획단독배정시 포함) 세무기관은 매년 7월말 전과 차년 1월 말으로 지정한 중점납세자의 반년도과全年도의 기본상황, 소득, 납세 등 상황을 Excel 형식으로 《개인소득세 중점납세자 소득과 납세상황 집결표》를 작성하여 국가세무총국(소득세 관리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5조** 각급 세무기관은 개인사업자, 개인 독자기업과 합동기업 투자자 및 개인적으로 독립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 독자기업과 합동기업이 장부를 건립하고 재무관리를 규범화하며 재무제도를 완벽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는 세금통제장치를 사용하여 납세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통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인정과세업무를 완벽화하고 장부와 증빙이 구전하지 못하여 장부검사를 통한 세금징수를 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인정과세를 실행하고 또한 납세자의 경영상황에 따라 적시에 인정과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세무계통의 협력협조를 보장하고 정보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정보교류와 지역 간의 협조조사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동일 투자자가 2개 또는 2개 이상 지역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합병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소득세 감독통제의 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4) 개인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 관리를 보장하여 1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기업의 생산경영에 사용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5) 개인이 투자한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전공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자금으로 본인, 가족 및 관련인원에게 지급한, 생산경영과 무관한 소비성, 재산성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6) 공연, 광고, 강의, 의료 등 인원의 노무보수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보장하고 선공제선납부 방법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여 근원으로부터 징수관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와 독립납세자에 대한 전문조사를 보장하고 세수위법 범죄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매년 관련 매스컴을 통하여 2건 내지 3건의 개인소득세 위법 범죄사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기관은 중점납세자와 독립납세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일상관리를 중시 및 보장하고 적시에 징수관리의 빈틈과 취약일환을 발견하여 징수관리제도, 방법을 제정 및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일상검사는 성급 이하 세무기관의 징수관리부서와 세정부서가 함께 조직 실시한다. 일상검사의 실시하는 반드시 계획을 제정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중복검사를 피면하여 납세자의 생산경영에 영향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장 세원 원천관리 보장**

**제38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관리제도를 엄정히 하고 누락징수, 누락등기 납세자에 대한 정리사업을 열심히 진행하여 실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39조** 세무기관은 관련 요구에 따라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서류함을 건립 건전히 하고 개인소득세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업무를 계속하여 잘 진행하고 원천징수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1) 현유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업무제도와 방법을 계속하여 집행하고 또한 실천 중에서 부단히 완벽화 하여야 한다.

(2) 현지의 모든 행정단위,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정리와 실정파악을 진행하고 이 기초에서 납세 서류함 관리지수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대장 또는 기본장부를 건립하고 그에 대해 추적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3) 전민 전액 관리와 배합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제도를 보급하여야 한다.

(4) 하기 업종에 대하여 중점 세원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금융, 보험, 증권, 전력, 전신, 석유, 석유화공, 담배, 항공, 철도, 부동산, 학교, 병원, 도시수도·가스 공급, 출판사, 도로관리, 외국인투자기업, 하이테크기업, 중개기구, 체육구락부 등 고소득업종 및 연속 3년(3년 포함)간 제로신고를 진행하는 원천징수단위(이하 장기 제로신고단위라고 약칭).

(5) 중점 세원관리 업종, 단위와 장기 제로신고 단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전문검사 중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그의 납세신고자료에 대해 중점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 각급 세무기관은 각 부서와의 협력협조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여 공

안, 공상, 은행, 문화, 체육, 부동산관리, 노동, 외환관리 등 사회 공공부서로부터 세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42조** 각급 세무기관은 관련부서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세원관리를 보장하고 납세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세원의 변화상황을 분석하고 변화가 비교적 큰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적시에 원인을 분석하고 상응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각급 세무기관은 장부검사에 의한 세금징수를 보장하는 기초에서 징수관리법 제35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정기징액 인정과세와 과세소득을 확정방식을 취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기타 합리한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4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에 대한 인정과세방식을 확정된 후 대표성이 있는 전형 납세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 기초에서 의무납세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형조사를 진행하는 납세자의 수는 전체 인정과세납세자 수의 3%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제9장 전민 전액 관리 보장

**제45조** 전민 전액 관리란, 무릇 과세소득을 취득한 개인에 대해 소득액이 개인소득세 납세기준점에 도달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한 전부 소득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를 통하여 세무기관의 관리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제46조** 각급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를 선후 순으로, 중점업종, 기업과 납세자 및 일반 업종, 기업과 납세자를 선후 순으로 하여, 먼저 “관리에 귀속”시킨 후 규범화하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민 전액 관리사업을 추진시킨다.

**제47조** 각급 세무기관은 규정과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 서류함 관리제도, 원천징수 명세장부 제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동시 신고제도, 사회 각 부서와의 협력협조제도를 다그쳐 건립하여 전민 전액 관리에 기초를 닦아놓아야 한다.

**제48조** 각급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고 또한 금세공정 제3기의 총 계획과 요구에 맞춰 정보화 수단에 의탁하여 점차적으로 전민 전액 신고관리를 실현하고 이 기초에서 모든 납세자에게 납세증빙(증명)을 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세무기관은 전민 전액 관리에서 장악한 납세자 정보,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세원 감독통제 정보, 관련부서와 매스컴에서 제공한 정보, 세수관리 인원이 수집한 정보 등을 충분히 이용하고 국가 관련 법률과 정책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신고 납세자의 납세신고상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상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분석과 판단을 하고 개인소득세 납세평가

를 진행하여 전민 전액 관리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세무기관은 개인 독자와 합동기업 투자자, 개인사업자, 독립용역제공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독립납세자의 기초정보와 세원관리업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개인소득세 납세평가는 “수공과 컴퓨터 결합”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본원리와 흐름은 아래와 같다. 현지 주민 소득수준 및 그 변화, 업종 소득수준 및 그 변화 등 개인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에 의거 납세평가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수소득의 증감액, 증감율 또는 업종 평균 지수모듈에 의거 납세평가 중점대상을 확정한다. 납세평가대상에 대해 구체평가분석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자의 개인소득세에 변화를 주는 구체요소를 찾아낸다. 이에 의거 평가대상과 예약상담을 진행하고 상황 설명 및 착오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검사부서에 넘겨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또한 계속하여 지속적인 중점관리를 진행한다.

**제52조** 세무기관은 하기 범위와 내원에 따라 납세평가 정보를 수집한다.

(1) 정보수집 범위

- ① 현지 종업원 연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 수준
- ② 현지 업종별 종업원의 연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 수준
- ③ 현지 업종별 자금이윤율
- ④ 기업 재무제표 관련 수치
- ⑤ 주식제기업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배분상황
- ⑥ 기타 관련 데이터

(2) 정보수집 내원

- ① 세무등기 관련 정보
- ② 납세신고 관련 정보
- ③ 재무제표 관련 정보
- ④ 세금통제수금장치 관련 정보
- ⑤ 중개기구에서 발행한 감사보고서, 평가보고서 정보
- ⑥ 관련 부서, 매스컴에서 제공한 정보
- ⑦ 세수관리인원이 납세자로부터 수집 파악한 정보

⑧ 기타 루트를 통하여 수집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 관련 정보.

**제53조** 세무기관은 납세평가분석 지수, 재무분석 지수, 납세자 불량기록 평가분석 지수를 설정하고 분석을 통하여 일정기간 개인소득세 제반 세금원에 증감변화가 발생한 주요업종, 주요기업, 주요개인을 확정하여 납세평가의 중점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인소득세 납세평가 절차, 지수, 방법 등은 총국의 《납세평가 관리방법》(시범)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4조** 개인소득세 납세평가는 주로 하기 항목에서 진행한다.

(1) 임금급여소득. 주로 임금총액 증감율과 당해 항목의 세금 증감율을 대조분석하고, 인당 임금 증감율과 인당 당해 항목 세금 증감율을 대조분석하며, 세금 증감율과 기업 이윤 증감율을 대조분석하고, 동업종, 동일 직무 인원의 소득과 납세상황을 대조 분석한다.

(2)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주로 당해연도 당해 항목의 세금과 그전연도 동기 숫치를 대비분석하고, 당해 항목 세금 증감율과 기업 이윤 증감율을 대조분석하며, 기업의 개인 자본금 증가상황과 기업 세후이윤 배분상황을 분석한다.

(3)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개인 독자기업과 합동기업 포함). 주로 당해연도와 그전연도 당해 항목 세금을 대조분석하고, 당해 항목 세금 증감율과 기업 이윤 증감율을 대조분석하며, 세전공제항목이 현행 정책규정에 부합되는지, 연속 몇 개월 제로 신고를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동일 지역, 동일 업종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세부담과 대조 분석한다.

(4) 기업·사업단위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주로 당해연도와 그전연도 당해 항목 세금을 대조분석하고, 당해 항목 세금 증감율과 기업 이윤 증감비율을 대조분석하며, 업종이윤율, 납부한 세금이 이윤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등 상황, 연속 몇 개월 제로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동일 지역, 동일 업종 기업·사업단위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의 세부담을 대조 분석한다.

(5) 노무보수소득.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을 이전과 대비한 상황, 용역비 지급 계약서, 협의, 항목 상황, 단위에서 영수증 없이 용역보수 지급상황을 분석한다.

(6) 기타 각종 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실황과 결부하여 목표성 평가지수를 선택하여 평가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10장 부 칙

**제55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56조** 이전의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

행한다.

**제57조** 본 방법에서 미진한 사항은 세수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8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세무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 실시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 본 방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외국 국적 개인의 개인소득세납세대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 國稅函[2006]58호**

2006 01 23 국가세무총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지방세무국 귀하:

외국 국적개인(홍콩, 마카오, 대만 및 화교포함, 이하 동일)의 개인소득세 징수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하여, 외국 국적인의 개인소득세납세자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을 단위로 외국 국적인에 대한 기본납세관리대장을 작성할 것**

기층세무기관은 관할내에 외국 국적인이 취업하고 있는 단위가 있다면, 그 외국인의 수가 몇 명이든, 그 외국 국적인이 장기취업상태인지 단기취업상태인지에 불문하고, 모두 당해 기업을 단위로 하여 납세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그 내용에는 반드시 동 외국인의 성명(중국어 성명), 국적, 직무, 임직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2.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초위에 인별 납세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할 것**

기층세무기관은 외국 국적인에 대하여 기업을 단위로 기본납세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초위에, 당해 외국 국적인에 대하여 인별 납세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납세관리대장의 내용으로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외국 국적인의 성명(중국어 성명 및 외국어 성명), 성별, 출생지(중문 및 영문), 출생시기, 국외주소(중문 및 영문), 파견단위의 명칭, 중국 내에서의 임직기간 혹은 용역제공기간, 직무, 거주기간, 출입국기간, 중국내 거주지 주소, 중국내 전화번호, 우편번호, 수입금액, 지급지역, 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세액, 납부할 세액, 기납세액, 납부시기 등의 정보

**3. 동태관리**

기업단위의 외국 국적인 기본납세관리대장과 외국 국적인에 대한 인별 납세관리대장에 대하여 동태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당해 외국 국적인의 증감변동, 직무변동, 거주기간, 출입국시간, 수입금액변화 등에 근거하여, 적시에 납세관리대장의 내용을 갱신하여 외국 국적인의 개인소득세관리의 과학화 및 세밀화를 실현해야 한다.

#### 4. 납세대장작성에 대한 심사

각 지역은 국가세무총국의 지시에 따라 2006년 6월 말 전에 납세대장관리  
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고, 납세대장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만일, 국가세무총국의 “기업단위로 납세대장작성, 인별 납세대장작성”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기 안에 관리체제를 건립하  
여, 기업단위 납세대장관리 및 인별 납세대장관리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은 외국 국적인에 대한 개인소득세관리대장 작성을 종결하  
고, 2006년 7월 31일 이전에 국가세무총국의 국제세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7월~12월 사이에 외국 국적인의 개인소득세관리대  
장 작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 및 종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할 것이다.

국가세무총국  
2006년 1월 23일

작 성 자

◆ 정준규 책임연구원(동북아팀)

中,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